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제세의원 대표발의)

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증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
골자로 하는 '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오제세의원을 통해 대표발의(10312)했다. 협회는
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.

의안번호 : 7853

발의연월일 : 2010. 3. 12.

발의자 : 오제세·강운태·김성식·김영진·박선숙·이영애·이인기·조경태·임영호 이시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액화석유가스충전소(이하 "충전소"라 한다)에서 판매하는 수송용LPG(부탄)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, 교육세 등 제세금 비중은 대체적으로 판매가의 30%에 달하고 있음.

예를 들어, 2009년도 수송용LPG의 전국평균 소비자가는 리터당 831원이었고 이중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은 243원으로 소비자가의 약 30%를 차지하고 있음.

충전소는 LPG를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할 때에 정부가 부과하는 개별소비세, 교육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국가를 대신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, 신용카드 등의 사용 매출 급증으로 충전소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충전소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충전소가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송용LPG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, 교육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충전소가 수송용LPG를 판매할 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그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, 교육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함(안 제126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6조의6(수송용 LPG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(이하 이 조에서 “충전소”라 한다)가 수송용 LPG를 판매할 때에는 2012년 12월 31까지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·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으로 결재하는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액공제를 신청한 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부당공제금액과 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한다. 이 경우 가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「국세 기본법」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송용 LPG에 대한 판매금액의 확인방법,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수송용 LPG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판매금액 분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<u>제126조의6(수송용 LPG 판매에 따른 신용 카드등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)</u>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(이하 이 조에서 “충전소”라 한다)가 수송용 LPG를 판매할 때에는 2012년 12월 31까지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·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 등”이라 한다)으로 결제하는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액공제를 신청한 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부당공제금액과 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한다. 이 경우 가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수송용 LPG에 대한 판매금액의 확인방법,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